

영등포구의회
제 1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90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범조항을
변경하고, 위임 근거가 미약한 가스사업 허가기준의 면적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조항 변경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 중 용기 충전소 및 자동차
충전소 대지 면적 제한사항 삭제(안 별표 제3호 관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6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9. 3 ~ 9. 2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7. 29 시행)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중 용기 충전소(3,000 m^2 이상) 및 자동차 충전소(1,000 m^2 이상)의 대지 면적 제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충전소 허가 기준 중 대지 면적에 대한 위임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소와 자동차 용기 충전소의
대지 면적 제한 폐지 등의 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사업 허가 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구 지역이라도 그 시·군·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